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6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권성동 · 윤한홍
박정하 · 고동진 · 박충권
유영하 · 구자근 · 박상웅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,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,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,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·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·변경 시, 주민 공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, 주민 공람,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
나.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, 주민 공람,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.

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원활한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 공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공청회 개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,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.</u>
제9조(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원활한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공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공청회 개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.</u>